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287호  
2015. 4. 14.(화)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5858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자 치 법 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5858호**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등에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제32조제3항”을 “제32조 제4항”으로, “수수료”를 “보수”로,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32조제3항”을 “법 제32조제4항”으로, “지급·반환채무 이행”을 “반환채무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급·반환채무 이행”을 “반환채무이행”으로 한다.

별표 1 중 제목란의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매매·교환 란 중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란 다음에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6억원 이상<br>9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같은 별표 중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외의 거래)란 중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란 다음에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3억원 이상<br>6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같은 별표 비교 1.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비교 2.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교 2. 가. 중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하며, (1) 중 “6억원 이상”을 “9억원 이상”으로 하고, (2) 중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교 2. 나. 중 “중개업자”를 “개업공인중개사”로 하며, “중개수수료”는 각각 “중개보수”로 한다.

별표 2의 “2.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란 중 “지급·반환채무 이행”을 “반환채무이행”으로 하고 “나. 계약금 등의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위한 보험·공제가입비” 중 “지급 또는 반환의 보증”을 “반환의 보증”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조문내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관련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 나.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거래내용이 주택 매매·교환인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을 “1천분의 5”로 하고, 임대차 등인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며 상한요율은 “1천분의 4”로 함(안 별표 1)
  - 다.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함(안 제2조1항, 2항, 안 별표 1)
  - 라.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안 제2조2항, 안 별표 1)
  - 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신설에 따라 조례상의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삭제)



#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       |  |
|-------|--|
| 기관의 장 |  |
| 선     |  |
| 람     |  |

|   |   |  |  |  |  |  |  |  |  |
|---|---|--|--|--|--|--|--|--|--|
| 공 |   |  |  |  |  |  |  |  |  |
|   | 람 |  |  |  |  |  |  |  |  |